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71
----------	------

제출일자 : 2024. 11. 5

제 출 자 : 달성군주



1. 개정이유

예산 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계층 참여를 명문화하여 제도 운영의 균형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제도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 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경품 등 제공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인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전략국장으로 변경함(안 제11조제3항)
- 나.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에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 보장
(안 제11조제4항)
- 다.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우선 검토 신설(안 제14조제2호)
- 라.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으로 부서장 명칭 변경
(안 제24조제2항)
- 마. 주민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경품 제공 근거 마련
(안 제26조제2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4. 9. 30. ~ 10. 21.)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전략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사회적약자”를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으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조정”을 “조정(안전사고 예방관련 사업 우선 검토)”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제안 및 설문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